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선박안전법」제8조(정기검사)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증가산금 부과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2일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1. **공고명** : 「선박안전법」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
2. **공고기간** : 2026. 8. 12.(수) ~ 2026. 8. 26.(수)
3. **공고내용**

부과 대상자	위반 사실	부과 근거	부과 금액	납부 기한
수상에스티㈜	정기검사 기간 위반 (25.1.31. ~ 360일 초과 위반)	「선박안전법」 제89조제2항제1호	5,000,000원 (과태료)	2026.8.29. (최초 납부 기한 2026.6.29.)
	과태료 미납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	150,000원 (가산금)	
	증가산금 부과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2항	60,000원 (증가산금)	
합 계			5,210,000원	

4. 기타사항

-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(☎051-609-6581)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증가산금 부과 알림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